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년단체 및 시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38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청년단체 및 시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3

I. 개요

1.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3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왕진의원 등 17인
- (2) 제 안 일 : 2024. 7. 1.
- (3) 회 부 일 : 2024. 7.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로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30대 청년층에서 매년 약 200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타 연령층 대비 자살 사망자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만성 질환 등 건강문제가 큰 원인을 차지하는 노년층 고독사와 달리 청년층 고독사는 또 다른 양상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별도의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 기관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

년층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청년단체 및 시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단체·시설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2.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u>단체 및 청년시설</u>
<u>2.·3.</u> (생략)	<u>3.·4.</u>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조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함.

〈 고독사 법적 정의 개정 경과 〉

	제정 당시 (‘21.4.1. 시행)	1차 개정 (23.6.13. 시행)	현행 (‘24.2.6. 시행)
사망 전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u>홀로</u> 사는 사람이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u>사회적 고립</u>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사망 시	자살·병사 등으로 <u>혼자</u> 임종을 맞고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
사망 후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삭제)

-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및 사회관계망 약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며,
- 특히 청년층¹⁾의 경우 학교폭력, 입시 실패, 가족 간 불화, 직장 내 따돌림 등의 경제활동 참여나 사회적 관계 실패 경험 등이 누적되면서 관계 단절 및 고립이 고독사로 진행될 위험이 높음.
- 보건복지부의 2021년 고독사 사망 통계에 따르면, 전체 3,378명 중에서 청년(20·30대)은 217명으로 40·50대(1,527명), 60·70대 이상(1,532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동일 연령대의 전체 사망자 수 대비 고독사 사망자 수의 비율은 20대는 1.9%, 30대는 3.6%에 이르고 있음.

1)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또한, 20대와 30대의 경우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각각 30명(56.6%), 66명(40.2%)을 차지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만성 질환 등 건강문제가 큰 원인을 차지하는 노년층 고독사와 양상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음.

< 2021년 고독사 사망 통계 >

(단위: 명, %)

구분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연령 미상	계
고독사 사망자 수	2	53	164	526	1,001	981	624	27	3,378
전체 사망자 수 대비	0.1	1.9	3.6	4.7	3.9	2.2	0.28	-	1.1
고독사 중 자살 사망자 수	2	30	66	137	169	105	57	5	571

*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 주민등록연앙인구²⁾ 기준, 연령미상은 변사자의 부패 또는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청 자료에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

□ 그러나 현행법 제16조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³⁾,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청년과 관련된 기관 및 시설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연앙인구는 한 해의 중간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인구를 말함.

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동법 시행령에서는,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공공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학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고독사는 청년층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회문제이고, 청년층은 학교 폭력이나 대학입시 등 다른 연령대와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2023년 지자체 청년시설(센터) 현황 >

(단위: 개수)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센터 수	237	30	25	10	11	8	10	7	1	41	6	4	14	18	18	22	11	1
민간위탁	99	21	7	4	6	3	10	3	-	8	3	2	3	9	4	13	3	-
공공위탁	28	2	7	4	1	-	-	-	1	5	1	2	1	1	1	-	1	1
직접운영	110	7	11	2	4	5	-	4	-	28	2	-	10	8	13	9	7	-

자료: 국무조정실, 2023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통계

□ 다만, 상담·교육의 주체로 신설되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단체 및 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와, 그 단체 등이 상담·교육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현행법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에 관한 규정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상담·교육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청년 단체 및 시설에서 적절한 상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보건복지부는 현행법 제16조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 기관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 바 없음.

□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⁵⁾를 통해 2025년에 상담·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독사 예방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임.
-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서울시복지재단 내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⁶⁾에서 고립예방플랫폼 ‘똑똑’을 통해 고독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다양한 업무 매뉴얼 및 교육·홍보 자료 등을 공유하고 있음.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청년에 대한 상담·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문 의 처

02)6788-5497

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연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6) 서울시에서 사회적고립가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고독사 예방 위해 설치한 재단(‘22.10)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① 고립가구 현장대응 연계지원, ② 민간현장중심 모델 개발, ③ 광역자원개발 및 역량강화, ④ 고립예방 인식개선, ⑤ 스마트 돌봄지원, ⑥ 고립가구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